

2014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2014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성공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1월 28일

중소기업청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공간, 창업교육, 전문인력 집중 코칭, 시제품제작 지원 등 창업계획부터 사업화까지 전단계를 일괄 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

□ 모집규모 : 250명(팀) 내외

지역별 사관학교	선발인원(예정)		비 고
	입소형	준입소형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120명(팀)	-	전원 입소형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25명(팀)	10명(팀)	입소 + 준입소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20명(팀)	10명(팀)	* 입소형 신청자 우선 선발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20명(팀)	10명(팀)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충남 천안)	30명(팀)	5명(팀)	

* 입 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 준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의무 부여(주1회 등)

* 입소, 준입소는 구분 모집하며 입소를 우선 선발(안산은 입소형만 운영)

* 지방 사관학교 특화산업 분야 선발 우대(안산 제외)

지방 사관학교	특화산업 분야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산업, 디자인·공예,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식품바이오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디지털 기기부품, 한방바이오,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산업기계(부품), 융합부품소재, 해양산업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	바이오, 영상,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2 신청방법 및 자격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4년 2월 3일(월) ~ 2월28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
<온라인 신청단계>

①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 → ④ 기본정보
입력 → ⑤ 참여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업로드 → ⑥ 제출

□ 신청자격

- ① 만 39세 이하(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함(신청 후 변경불가)
-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 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② 창업 후 3년 이하(2011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이 안되는 자(기업)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②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1 참조]을 통해 지원 받은 자 또는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선정 후 중도포기자,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로 공지된 자, 예비창업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③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 단,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 지원제한 업종[붙임2 참조]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

⑤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분야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 신청이 안되는 분야 : 붙임2 참조

* (유의사항) 지식서비스업 중 '앱' 분야 신청 안내

- '앱' 분야는 전체 선발인원의 15% 이내로 제한(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중복 신청 불가)
- *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앱, 콘텐츠, SW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2월 중 별도 모집공고(150명 내외 선발) 예정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 총사업비 및 현금·현물 부담 산출(예시)

- 정부지원금이 5,000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 7,143만원($=5,000\text{만원}/70\%$)
-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현금 : 715만원($=7,143\text{만원} * 10\%$)
-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현물 : 1,428만원($=7,143\text{만원} - 5,000\text{만원} - 715\text{만원}$)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 주요 지원내용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일괄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창업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 * 단계별 집중교육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기술지원)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
- (연계지원)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융자,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 사업비의 구분 및 용도

구 분	사용용도
창업활동비	입소 및 준입소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식비, 통근비, 숙박비)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 코칭비, 멘토비, 기술·경영자문비, 기술서적구입비 등
지재권 취득비	창업과제의 지식재산권 출원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개발기획, 과제참여인력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및 사용료, 설계 및 디자인비,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시험생산금형, 시제품보완제작 등 * 과제참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일 것
마케팅비	소비자반응조사, 개별전시회 참가, 카다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영상제작비 등

□ 사업추진 절차도



4. 선정절차

□ 선정평가

선정평가는 3단계(서류심사-면접심사-심층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창업넷 등)를 통해 게시

- (1단계, 서류심사)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면접심사 추천 대상으로 함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등
 -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면접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 (2단계, 면접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평가로 진행, 최종 선발인원의 1.1배수 내외로 심층심사 추천대상으로 함
 - 평가기준 : 창업의지 및 역량, 사업화 가능성, 시장경쟁력 등
 - * 청년창업자가 발표 원칙, 면접심사에 불참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심층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 (3단계, 심층심사) 교육과 인터뷰를 통한 사업계획 및 CEO자질,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타당성 등 심사
 - 평가기준 : 사업화실행계획 심층 검토 및 사업가역량지표 평가 등
 - * 2주간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불참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 입교 전 사업계획 수정·보완 및 창업교육, 코칭 실시
- (최종 선정)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
 - 심층심사 후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필요시 후보자 포함) 및 사업비 확정
 - *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중 예비창업자를 우선 선정

※ 서류 및 면접심사 시 가점사항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 단 권리권자에 한하여(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중인 것은 제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시행대회 포함)
 -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 여성
 - 장애인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 특허대전 수상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 각 항목별 0.5점을 부여(최대 2점)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신청서 제출 시 사업화계획서에 첨부, 추후 제출 불가)

□ 협 약

- 최종 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현금)을 납입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은 청년 창업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체결기간 이내 협약서 또는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청년창업자 부담금을 납입기한내에 미납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거나, 신청 후 신청제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협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은 청년 창업자와의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의 집행중지 및 회수 등 조치함
 -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등의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청년창업자의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 청년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 법인의 경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
- 청년창업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중간 및 졸업평가

-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추진 단계별로 중간평가(1차, 2차)를 실시
 - 사업수행에 대하여 4등급[우수, 보통, 미흡, 중단(퇴교)]으로 평가
 - * 평가점수가 60점미만이거나 평가결과 하위 10% 내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창업교육 이수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중단(퇴교) 결정
 - * 중단(퇴교)시 정부지원금은 지원 중지되며 기지급된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음
- 청년창업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졸업평가 실시
 - 사업수행 최종결과에 대해 3등급[성공(우수), 성공(보통), 실패(퇴교)]으로 평가
 - * 실패(퇴교)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5.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소하고, 필수교육 을 이수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팀)은 중간점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하여야 함
 - * 예비창업팀은 창업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해야 함

- 단계별 중간평가(1, 2차)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 미달자는
 때 평가시 10% 내외에서 탈락(퇴교) 될 수 있음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4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붙임1]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참조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6. 세부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창업자 모집 규모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사업안내

- 창업넷(www.changupnet.go.kr) > [창업사업화] >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sbc.or.kr) > [사관학교 소개] > [사업소개]

□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 안산)	031-490-1384 031-490-1278 031-490-137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중소기업연수원 내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062-250-303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053-819-5011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055-548-8050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남 천안)	041-589-083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내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층
중진공 창업기술처 (본사)	02-769-69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붙임 1】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09년 ~'13년(지원 제외 대상사업)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유망 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앱 창업 전문 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스마트 앱 창작터(창업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 상기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불가

【붙임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 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 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제외)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 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원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단,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